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- 951호

공 고 문

(확인서발급신청사실)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부동산의 표시 : 인천 서구 오류동 578(전 1,557㎡)
-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: (한글)1.신 맹 수 2.신 기 영 3.신 회 수 4.신 기 수
(한문)
-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: 1.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266
2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300
3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34
4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99
- ④ 신청인성명 : (한글) 신 상 철 (한문) 申 相 澈
- ⑤ 신청인주소 : 인천 서구 대곡동 136
- ⑥ 취득사유 : 1980년 3월 20일 매입
- ⑦ 공고기간 : 2007년 11월 6일 - 2008년 1월 5일 (2개월)
- ⑧ 통지불가사유 : 대장상 소유자 사망 및 주민번호 불명
- ⑨ 유의사항

가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
나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07년 11월 6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- 952호

공 고 문

(확인서발급신청사실)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부동산의 표시 : 인천 서구 오류동 568-2(답 1,441㎡)
-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: (한글)1.신 맹 수 2.신 기 영 3.신 회 수 4.신 기 수
(한문)
-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: 1.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266
2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300
3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34
4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99
- ④ 신청인성명 : (한글) 신 상 철 (한문) 申 相 澈
- ⑤ 신청인주소 : 인천 서구 대곡동 173
- ⑥ 취득사유 : 1980년 7월 10일 매입
- ⑦ 공고기간 : 2007년 11월 6일 - 2008년 1월 5일 (2개월)
- ⑧ 통지불가사유 : 대장상 소유자 사망 및 주민번호 불명
- ⑨ 유의사항

가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
나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07년 11월 6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- 953호

공 고 문

(확인서발급신청사실)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부동산의 표시 : 인천 서구 오류동 568-1(전 1,385㎡)
-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: (한글)1.신 맹 수 2.신 연 영 3.신 회 수 4.신 기 수
(한문)
-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: 1.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266
2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300
3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34
4.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199
- ④ 신청인성명 : (한글) 신 최 균 (한문) 申 最 均
- ⑤ 신청인주소 : 인천 서구 대곡동 173
- ⑥ 취득사유 : 1980년 7월 10일 매입
- ⑦ 공고기간 : 2007년 11월 6일 - 2008년 1월 5일 (2개월)
- ⑧ 통지불가사유 : 대장상 소유자 사망 및 주민번호 불명
- ⑨ 유의사항

가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나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07년 11월 6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- 954호

공 고 문
(확인서발급신청사실)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부동산의 표시 : 인천 서구 마전동 산17-2(임 298㎡)
-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: (한글)장 효 준 (한문) 張 孝 俊
-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: 인천 동구 송현동 55번지
- ④ 신청인성명 : (한글) 임 종 두 (한문) 林 鍾 斗
- ⑤ 신청인주소 :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성림아파트 101-402
- ⑥ 취득사유 : 1970년 1월 중여
- ⑦ 공고기간 : 2007년 11월 6일 - 2008년 1월 5일 (2개월)
- ⑧ 통지불가사유 :
- ⑨ 유의사항

가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나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07년 11월 6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- 955호

공 고 문
(확인서발급신청사실)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부동산의 표시 : 인천 서구 대곡동 산24(임 6,446㎡)
-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: (한글) 하동정씨종중 (한문)
- ③ 대장상 소유자주소 : 경성부 길야정 1정목 109
- ④ 신청인성명 : (한글) 정 철 모 (한문) 鄭 澈 模
- ⑤ 신청인주소 : 인천 계양구 효성동 200-1 현대아파트 404-601
- ⑥ 취득사유 : 1983년 11월 30일 매수
- ⑦ 공고기간 : 2007년 11월 6일 - 2008년 1월 5일 (2개월)
- ⑧ 통지불가사유 : 소유자 주소불명
- ⑨ 유의사항

가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나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07년 11월 6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- 958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11월 7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**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(안)
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행정수요 필요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을 통하여 구민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: 789명

○ 정원조정 : 775명 ⇒ 789명(증 14명)

○ 추가 소요 인건비 : 482,338천원

나. 행정기구 : “변동없음”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4. 첨부

비용소용 추계서

☐ 개정내용

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
-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

- 행정기구 : “변동없음”
- 정 원 :
 - ▷ 현 행 : 775명
 - ▷ 조 정 : 789명

3. 비용소요 내역

“ 별 첨 ”

비용추계서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근거						비 고
		내 역	단 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482,338,720							
1. 인건비	442,148,080							
가. 기본급	262,353,600	○ 구청장(연봉제)	75,936,000					
		○ 부구청장(연봉제)	72,367,000					
		○ 4급(연봉제)	62,045,000					
		○ 5급(26호봉)	2,776,700			12		
		○ 6급(20호봉)	2,214,900			12		
		○ 7급(14호봉)	1,755,800	6		12	126,417,600	
		○ 8급(10호봉)	1,390,600	6		12	100,123,200	
		○ 9급(5호봉)	994,800	3		12	35,812,800	
		○ 기능6급(22호봉)	2,284,600			12		
		○ 기능7급(20호봉)	1,996,600			12		
		○ 기능8급(18호봉)	1,726,900			12		
		○ 기능9급(15호봉)	1,455,100			12		
		○ 기능10급(19호봉)	1,455,300			12		
나. 상여금	41,976,570	○ 기말수당						폐지
		○ 정근수당	262,353,600		0.08	2	41,976,570	90%평균
다. 정액수당	137,817,910							
1)가족수당	8,904,000	○ 배우자	30,000	14	0.78	12	3,931,200	
		○ 존비속	20,000	14	1.48	12	4,972,800	
2)자녀학비수당	3,478,440	○ 중학교	46,500	14	0.19	4	494,760	
		○ 고등학교	355,200	14	0.15	4	2,983,680	
3)정근수당가산금	11,880,000	○ 25년 이상	130,000			12		
		○ 20년~25년미만	110,000			12		
		○ 15년~20년미만	80,000	6		12	5,760,000	
	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6		12	4,32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3		12	1,800,000	
4) 정액급식비	21,840,000	○ 일반직	130,000	14		12	21,840,000	
5) 교통보조비	20,880,000	○ 2급	200,000			12		
		○ 4급~5급	140,000			12		
		○ 6급~7급, 기능1~7급	130,000	6		12	9,360,000	
		○ 8급~9급, 기능8~10급	120,000	8		12	11,520,000	
6) 명절휴가비	26,235,360	○ 명절휴가	262,353,600		0.10		26,235,360	120%
7) 가계지원비	44,600,110	○ 가계지원	262,353,600		0.17		44,600,110	200%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근거						비 고
		내 역	단 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2. 물건비	21,420,000							
가. 직책급업무추진비	0	○ 4급	350,000			12		
		○ 5급	100,000			12		
		○ 6급	50,000			12		
나. 직급보조비	21,420,000	○ 4급	400,000			12		
		○ 5급	250,000			12		
		○ 6급	155,000			12		
		○ 7급	140,000	6		12	10,080,000	
		○ 8급	105,000	6		12	7,560,000	
		○ 9급	105,000	3		12	3,780,000	
		○ 기능6급	155,000			12		
		○ 기능7급	140,000			12		
		○ 기능8급	105,000			12		
		○ 기능9급	105,000			12		
		○ 기능10급	95,000			12		
3. 이전경비	18,770,640							
가. 성과상여금	18,770,640	○ 3급(20호봉)	3,229,400		0.80	1		
		○ 4급(20호봉)	2,880,100		0.80	1		
		○ 5급(18호봉)	2,495,900		0.80	1		
		○ 6급(18호봉)	2,137,600		0.80	1		
		○ 7급(15호봉)	1,801,000	6	0.80	1	8,644,800	
		○ 8급(12호봉)	1,486,000	6	0.80	1	7,132,800	
		○ 9급(10호봉)	1,247,100	3	0.80	1	2,993,040	
		○ 기능6급(18호봉)	2,137,600		0.80	1		
		○ 기능7급(15호봉)	1,801,000		0.80	1		
		○ 기능8급(12호봉)	1,486,000		0.80	1		
		○ 기능9급(10호봉)	1,247,100		0.80	1		
		○ 기능10급(9급10호봉)	1,247,100		0.80	1		
		○ 청원경찰(10호봉)	1,319,800		0.80	1		

※ 주1) 소요비용 계 중 상여금, 정근수당가산금, 교통보조비, 명절휴가비, 가계보조비 등은 1인 단가가 아님에 유의

2) 산출근거별 단가는 매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됨

3) 수당 중 위험근무, 대우공무원, 관리업무, 특수업무, 민원업무, 전산업무, 장려, 의회사무, 의료업무, 동근무, 사회복지업무,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